

신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에 관한 연구

이 방 식* · 박 석 재**

-
- I. 서론
 - II. 개정 배경 및 경위
 - III. 주요 개정 내용과 특징
 - IV. 요약 및 결론
-

I. 서 론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이 실무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국제표준은행관행¹⁾이 간행된 이후 신용장거래에서 불일치로 인한 지급거절이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런데 UCP 500이 개정되어 2007년

* 전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 부교수

1)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cation No. 645, 2003 ; 이하 '구 ISBP'라 칭한다.

7월 1일자로 UCP 600이 시행됨에 따라 구 ISBP의 개정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10월 UCP 600의 승인에 뒤따라 구 ISBP의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새로운 ISBP²⁾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ISBP는 학계에서 뿐만 아니라 실무계에서도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신 ISBP의 이해를 위하여 신 ISBP의 개정 배경 및 경위, 주요 개정 내용 등을 고찰함으로써 학계에는 이에 관한 연구의 기초를 제공하고, 실무계에는 ISBP 관련 업무를 행할 때 유용한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주로 ISBP의 신, 구 원문, UCP 500, UCP 600의 원문을 중심으로 하여 최근 발간된 국내·외 자료를 참조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취하기로 한다.

II. 개정 배경 및 경위

1. 개정 배경

UCP 500 제13조 (a)항에는 “...규정된 서류의 문면상 신용장의 제조조건과의 일치성은 본 규칙에 반영되어 있는 국제적인 표준은행관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³⁾라는 규정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 규정은 과연 어떠한 관행이 국제적인 표준은행관행인가에 관한 명확한 해답을 제공해 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방치하게 되면 국제거래의 대금결제수단으로서 신용장을 사용할 경우, 수출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소시키고 분쟁을 증대시켜 결국 신용장의 사용을 감소시키게 될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었다.⁴⁾ 또한

2)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subject to UCP 600(ISBP), ICC Publication No. 681, 2007 ; 이하 ‘신 ISBP’라 칭한다.

3) UCP 500 Article 13 a. “... Compliance of the stipulated documents on their fa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shall be determined by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as reflected in these Articles. ...”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가 수령한 많은 질문들에 따르면 UCP 500이 사실상 일관되게 이해되지도 않았고, 또한 일관되게 적용되지도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⁵⁾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은행위원회는 2002년 10월 30일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을 승인하였다. ISBP는 신용장통일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장통일규칙을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바레인의 화환신용장 전문가인 Paul De Vos씨는 UCP를 규칙 및 절차로 간주하고 ISBP를 최선의 관행으로서 간주하고 있다.⁶⁾ 반면 일부 은행들은 ISBP를 UCP 규칙의 명확화의 수단으로서가 아닌 UCP에 반대되는 규칙으로서 오해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⁷⁾

즉, ISBP는 서문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UCP 500의 실무상 보완하는 것”(a practical complement to UCP 500)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런데 신용장통일규칙의 제6차 개정판인 UCP 600(ICC Publication No. 600)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ISBP도 개정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다.⁸⁾ 더욱이 구 ISBP의 일부 조항들이 후술하는 바와 같이 UCP 600 내에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⁹⁾ 구 ISBP의 개정이 필연적으로 요구된 것

-
- 4) 대한상공회의소 편, 『ISBP(국제표준은행관행) 공식번역 및 해설서』, 대한·서울상공회의소, 2007. 12, p.11.
 - 5) D. Smith, “The Insight interview: Donald Smith”, DCINSIGHT, Vol.13, No.3, 2007. 7/9, p.5.
 - 6) M. Ford, “What traders expect from the new UCP”, DCINSIGHT, Vol.11, No.1, 2005. 1/3, p.23.
 - 7) L.A.J. Bacon, “Some key issues in the UCP revision”, DCINSIGHT, Vol.11, No.1, 2005. 1/3, p.6.
 - 8) 飯田勝人, “公表お目前にしたISBPの[最新版(updated version)]の概要, 『金融法務事情』, No.1801, 2007. 4. 25, p.4.
 - 9) 구 ISBP의 일부 조항들이 UCP 600 내에 삽입된 현재의 방식과 반대되는 주장을 한 덴마크의 실무자도 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ISBP는 매우 ‘깨끗한’(clean) 내용물을 가지고 있다. 즉, 그것은 주로 서류 심사를 다룬다. 이러한 점 때문에 수출상이 은행에 서류들을 제출할 때에 ISBP가 훌륭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만일 상세한 서류 심사에 관한 모든 신용장 규칙이 한 간행물 내에 모아진다면, 수출상은 서류를 제출할 때에 단지 한 간행물을 잠깐 들여다보면 될 것이다. 이것은 그에게 보다 나은 개요를 제공할 것이며, 더 적은 불일치로 귀착할 것이다. UCP의 한 가지 목적은 업계의 관행을 반영하는 것이다. 관행은 UCP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은 매우 어렵다. UCP 개정 보다는 ISBP의 개정이 보다 쉬울 것이기 때문에 운

이다.¹⁰⁾ 또 한 가지 주요한 개정 배경으로는 신용장의 50% 이상이 첫 번째 제시하는 때에 불일치 때문에 지급이 거절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수치에 근거하고 있다. 신 ISBP는 관행의 세계적인 통일성을 장려함으로써 불일치 수치를 극적으로 감소시키고 세계무역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다. 신 ISBP에 관하여 ICC 은행위원회 의장인 Donald Smith 씨는 “개정 ISBP는 UCP 600의 관행을 올바르게 적용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것은 모든 서류 심사자들이 필수적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¹¹⁾

2. 개정 경위

2002년에 ICC 은행위원회가 ISBP를 승인한 이후 구 ISBP는 세계적으로 은행, 기업, 물류전문가, 보험회사에게 귀중한 도움이 되었다. 즉, 구 ISBP는 환어음의 작성방법, 오타를 다루는 방법, 서류의 수정이나 변경, 원본과 사본, 운송서류의 서명방법, 보험서류의 주요 특징, 서류의 불일치 여부 등과 같이 신용장통일규칙에서 자세히 규정하지 못한 서류 작성 및 해석에 대한 일종의 지침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ICC의 ISBP 발간이 서류상 하자에 대한 논쟁이나 분쟁을 줄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¹²⁾ ICC 세미나와 워크숍 참가자들은 ISBP에 명시된 200개 관행의 적용 덕분에 지급거절 비율이 하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2006년 10월 UCP 600이 승인됨에 따라 ISBP의 최신판을 제공할 필요가 발생하였다.¹³⁾

송조항과 보험조항을 UCP로부터 ISBP로 이동함으로써 UCP를 현재의 관행과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보다 쉬울 것이다.”(K. Christensen, “UCP revision - the last six miles”, DCINSIGHT, ICC, Vol.12, No.3, 2006. 7/9, p.4.) 그의 주장은 일견 타당한 면도 있으나 UCP가 신용장 거래의 중심이 되는 규칙이라는 점에서 현행 방식이 보다 적절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10) Anonymous, “UCP update : Working on the final draft”, DCINSIGHT, ICC, Vol.12, No.3, 2006. 7/9, p.2.

11) <http://www.iccbooks.com/Product/ProductInfo.aspx?id=485&cid=121>

12) 정용혁·지경준, 『신용장 서류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관행 ISBP』, 신생커뮤니케이션, 2007. 9, p.2.

이를 위하여 2006년 10월 UCP 600의 승인에 뒤이어 UCP 초안작성그룹은 개정된 UCP의 내용과 조화되도록 구 ISBP를 최신판으로 만드는 책임을 떠맡았다. 그들이 목표로 한 것은 첫째, UCP 조항의 번호 변경이 신 ISBP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UCP 600 속에 삽입된 특정한 ISBP 조항들이 구 ISBP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 셋째, 신 ISBP의 표현 및 스타일이 UCP 600의 표현 및 스타일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목표 하에 진행되었다. 초안작성그룹은 개정된 표현을 편집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였다. 그 그룹은 각국의 은행위원회로부터 코멘트들을 받아들였는데, 19개국이 그들의 제안을 보내왔다.¹⁴⁾ 몇 개월의 작업 끝에 2007년 4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은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신 ISBP가 채택되었다.¹⁵⁾

그러나 여기에서 신 ISBP가 개정된(“revised”)이란 단어 대신 최신판(“updated”)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UCP 초안 작성그룹은 은행위원회에 대한 주석에서 ISBP에 행해지고 있는 유일한 변화는 대규모의 개정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UCP 600과 조화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였다.¹⁶⁾ 신 ISBP는 UCP 600과 은행위원회의 의견 및 결정과 일치한다. 이 간행물은 UCP 600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UCP 600에 규정된 관행을 실무자가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간행물은 UCP 600과 별개가 아니라 함께 읽혀져야 한다.¹⁷⁾

13) 신 ISBP 서문.

14) Anonymous, “ISBP 681 approved unanimously”, DCINSIGHT, Vol.13, No.3, 2007. 7/9, p.2.

15) 41개국이 가중치 기초로 투표에 참가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르헨티나 1, 호주 2, 오스트리아 2, 바레인 1, 방글라데시아 1, 벨기에 2, 캐나다 3, 중국 3, 대만 2, 크로아티아공화국 1, 쿠바 1, 사이프러스 1, 체코 공화국 1, 덴마크 2, 핀란드 1, 프랑스 3, 독일 3, 그리스 1, 홍콩 1, 인도 2, 인도네시아 1, 이란 1, 아일랜드 2, 이스라엘 1, 이탈리아 3, 일본 3, 요르단 1, 한국 2, 레바논 1, 말레이시아 1, 네덜란드 2, 나이지리아 1, 노르웨이 2, 러시아 2, 싱가포르 2, 스웨덴 2, 스위스 2, 터키 1, 아랍에미리트연합 1, 영국 3, 미국 3 Yes 총계 71 ; No 투표 : 0(Anonymous, supra note 14, op. cit., p.2.)

16) Anonymous, “ISBP on tap”, DCINSIGHT, Vol.13, No.2, 2007. 4/6, p.2.

17) 신 ISBP 서문.

Ⅲ. 주요 개정 내용과 특징

구 ISBP의 조항 수는 200개이었지만, 신 ISBP에서는 UCP 600의 제정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조항을 제외시키고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였다. 즉, 구 ISBP로부터 17개 조항이 제외되고, 다른 한편 2개 조항이 신설되어 결과적으로 총계 185개 조항이 되었다.¹⁸⁾

1. 신 ISBP에서 제외된 조항

다음의 조항들은 구 ISBP에서 존재하였으나 신 ISBP에서는 제외되었다. 이하에서는 제외된 조항들의 내용 및 배경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일반원칙 관련 조항

(1) 일자

UCP 500 제43조 (a)항의 제시를 위한 최종 일자에 관한 규칙은 한 통 이상의 운송서류 원본을 포함하도록 요구된 제시에만 적용된다. 운송서류라 함은 신용장 통일규칙 제23조 내지 제29조에 커버되어 있는 서류를 말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서류는 반드시 신용장의 유효기일까지 제시되어야 한다.¹⁹⁾

동 조항은 UCP 600 상에 “신용장에 명시된 각 서류 중 한 통 이상의 원본이 제출되어야 한다.”²⁰⁾는 조항, “제29조 (a)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자 또는 수익자의 대리인에 의한 제시는 유효일자 또는 유효일자 이전에 행해져야 한다.”²¹⁾는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신 ISBP에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제외되었다. 또한 UCP 600에서는 운송서류를 제19조 내지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UCP 500 제23조 내지 제29조에 커버되어 있

18) 飯田勝人, 전계논문, p.5.

19) 구 ISBP para. 16.

20) UCP 600 제17조 (a)항.

21) UCP 600 제6조 (e)항.

는 서류라는 내용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외된 것이다.

(2) 신용장통일규칙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표현

“신속한”(prompt), “즉시”(immediately),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ossible) 또는 이와 유사한 단어와 구절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표현이 사용된 경우에는 은행은 이들 표현을 무시하여야 한다.²²⁾

동 조항은 “UCP 600 상에 “신속한”, “즉시” 또는 “가능한 한 빨리”라는 단어들은 서류상에서 요구되지 않았다면 무시된다.”²³⁾라는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신 ISBP에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제외되었다.

(3) 서류간의 불일치성

신용장에 따라 제시된 서류는 결코 상호 모순된 것으로 나타나서는 안된다. 이 요구는 자료내용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서류가 모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²⁴⁾

동 조항은 UCP 600 상에 “신용장, 서류 그 자체 그리고 국제표준은행관행의 문맥에 따라 읽을 때의 서류상의 자료는 그 서류나 다른 소정의 서류 또는 신용장상의 자료와 반드시 일치될 필요는 없으나, 그들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²⁵⁾라는 규정이 추가됨으로써 신 ISBP에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제외되었다.

2) 송장 관련 조항

(1) 명義와 주소

송장은 반드시 신용장에서 지정한 수익자에 의하여 발행되었음이 문면상 나타나 있어야 한다. 주소의 일부를 구성하는 텔렉스 번호 또는 팩스 번호 등은 표시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이를 기재한 경우에도 신용장의 그것과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없다.²⁶⁾

22) 구 ISBP para. 23.

23) UCP 600 제3조.

24) 구 ISBP para. 24.

25) UCP 600 제14조 (d)항.

동 조항은 UCP 600 상에 “상업송장은 (제38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자가 발행한 것으로 보여야 한다.”²⁷⁾는 조항과 “수익자 및 개설의뢰인의 주소의 일부로 기재된 세부 연락처(팩스, 전화, 이메일 및 이와 유사한 것)는 무시된다.”²⁸⁾는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신 ISBP에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제외되었다.

송장은 반드시 개설의뢰인의 명의 앞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주소의 일부를 구성하는 텔렉스 번호 또는 팩스 번호 등은 표시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이를 기재한 경우에도 신용장의 그것과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없다.²⁹⁾

동 조항은 UCP 600 상에 “상업송장은 (제38조 (g)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의뢰인 앞으로 작성되어야 한다.”³⁰⁾는 조항과 “수익자 및 개설의뢰인의 주소의 일부로 기재된 세부 연락처(팩스, 전화, 이메일 및 이와 유사한 것)는 무시된다.”³¹⁾는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신 ISBP에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제외되었다.

(2) 물품 명세 및 기타 송장에 관련된 일반사항

원본과 사본의 요구된 숫자는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³²⁾

동 조항은 UCP 600 제17조에 원본 및 사본에 관한 주제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제외되었다.³³⁾

3) 해상 선화증권 관련 조항

(1) 적재항과 양륙항

컨테이너 야적장(CY) 또는 컨테이너화물 집화장(CFS)이 수령장소로서 기재되어 있고, 그러한 장소가 기재된 적재항과 동일한 경우에는(예컨대 수

26) 구 ISBP para. 60.

27) UCP 600 제18조 (a)항 i호.

28) UCP 600 제14조 (j)항.

29) 구 ISBP para. 61.

30) UCP 600 제18조 (a)항 ii호.

31) UCP 600 제14조 (j)항.

32) 구 ISBP para. 71.

33) H. Erdemol, “A summary of the updated ISBP”, DCINSIGHT, Vol.13, No.3, 2007. 7/9, p.3.

령장소 : 홍콩 CY, 적재항 : 홍콩항), 이들 장소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적재항의 명세와 “본선적재” 표기상의 선박명은 필요하지 않다.³⁴⁾

동 조항은 UCP 600 제19조 (a)항 (ii)호 및 제20조 (a)항 (ii)호가 규정됨으로써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제외되었다. 이러한 조건들은 운송서류가 발송, 수탁 또는 본선 선적의 어떠한 진술이 신용장에서 명시된 장소 또는 항구에 관련되는 것인가를 분명히 나타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³⁵⁾

(2) 환적과 분할선적

환적이 금지될 수 있다 하더라도, UCP 500 제23조 (d)항은 여전히 일정한 사정에 따른 환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면서 UCP 500 제23조 (d)항 (i)호와 (ii)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선화증권의 문면상 환적될 것이라거나 또는 환적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것은 하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³⁶⁾

동 조항은 UCP 600 제20조에서 커버되고 있기 때문에 제외되었다.³⁷⁾

(3) 무고장 선화증권

“무고장”(clean)이란 단어는 신용장이 “무고장 본선적재 선화증권” 또는 “무고장 본선적재”의 표식이 있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선화증권상에 나타낼 필요가 없다.³⁸⁾

동 조항은 UCP 600 상에 “무고장”이라는 단어는 비록 신용장이 운송서류가 ‘무고장 본선적재’일 것이라는 요건을 포함하더라도 운송서류상에 나타낼 필요가 없다.”³⁹⁾라는 규정이 추가됨으로써 신 ISBP에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제외되었다.

34) 구 ISBP para. 82.

35) H. Erdemol, op. cit., p.4.

36) 구 ISBP para. 88.

37) H. Erdemol, op. cit., p.4.

38) 구 ISBP para. 91.

39) UCP 600 제27조 .

4) 용선계약부 선화증권 관련 조항

(1) UCP 500 제25조의 적용

신용장이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용선 계약에 따른다는 명시를 내포하여 제시된 해상운송서류는 반드시 UCP 500 제25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⁴⁰⁾

동 조항은 UCP 600이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에 관해서는 제2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모순되므로 신 ISBP에서는 당연히 제외된 것이다.

(2) 무고장 용선계약부 선화증권

“무고장”이란 단어는 신용장이 “무고장 본선적재 용선계약부 선화증권” 또는 “무고장 본선적재”의 표시가 있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에 나타낼 필요는 없다.⁴¹⁾

동 조항은 전술한 바와 같이 UCP 600 제27조가 추가됨으로써 신 ISBP에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제외되었다.

5) 복합운송서류 관련 조항

(1) 무고장 복합운송서류

“무고장”(clean)이란 단어는 신용장이 “무고장 본선적재 복합운송서류” 또는 “무고장 본선적재”의 표시가 있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복합운송서류상에 나타낼 필요는 없다.⁴²⁾

동 조항은 전술한 바와 같이 UCP 600 제27조가 추가됨으로써 신 ISBP에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제외되었다.

40) 구 ISBP para. 101.

41) 구 ISBP para. 112.

42) 구 ISBP para. 135.

2. 신 ISBP에서 신설된 조항

1) 일반원칙 관련 조항

*서류의 사본은 서명될 필요가 없다.*⁴³⁾

즉, 서류의 사본은 원본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야 하지만 서명될 필요는 없다. 이에 관한 한 가지 예로서 ICC의 공식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Non-negotiable copy of B/L에 수정이 있었으나 운송인이나 그의 대리인의 약식서명이나 서명이 없었다. 이 경우 Non-negotiable copy of B/L에는 서명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Non-negotiable copy of B/L은 수정이 있었다면 이것까지 포함하여 원본 B/L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원본 B/L에만 운송인이나 그의 대리인의 서명이나 약식 서명이 있어야 한다. Non-negotiable copy of B/L은 서명이나 약식 서명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⁴⁴⁾

2) 용선계약부 선화증권 관련 조항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가 포함된 운송서류는 UCP 600 제22조의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이다.*⁴⁵⁾

신용장이 'Charter Party B/L acceptable'이라는 뜻의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을 허용하고 있다면 UCP 600 제22조가 적용된다. 신용장에서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을 제출하면 하자가 된다.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용장에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을 허용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⁴⁶⁾

3. 형식의 변화

명칭에 약간의 변화가 발생했는데, 구 ISBP 명칭의 마지막 부분에

43) 신 ISBP para. 32.

44) ICC Banking Commission, Official Opinion R.337-1998/99(정용혁·지정준, 전게서, p.57.).

45) 신 ISBP para. 116.

46) 정용혁·지정준, 전게서, pp.172~173.

subject to UCP 600이라는 문언이 부가되어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Subject to UCP 600(ISBP)”과 같이 변경되었다.

또한 구 ISBP에서 단지 UCP라고 표시되어 있던 것들이 모두 UCP 600이라고 기재되었다. 이는 신 ISBP가 UCP 600의 보충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조항의 표시에 관해서도 첫 글자가 대문자로 Article이라고 표시되었던 기존의 표시가 전부 소문자를 이용하여 article이라고 표시되었다.⁴⁷⁾

한편 기존 ISBP 제목의 표시 및 배치 순서는 예비적 검토, 일반원칙, 환어음 및 만기일의 계산, 송장, 해양/해상선화증권, 용선계약부 선화증권, 복합운송서류, 항공운송서류, 도로/철도/내수로 운송서류, 보험서류 및 원산지 증명서와 같이 되어 있었다. 이들 운송서류 중 해양/해상선화증권, 용선계약부 선화증권 및 복합운송서류의 3종류에 관하여 신 ISBP는 UCP 600의 조문의 배치에 따라 ① 복합운송서류, ② 선화증권, ③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으로 배치 순서를 교체하였다. 왜냐하면 과거 UCP 500에서는 해상선화증권이 제일 먼저 규정되고 있었지만 UCP 600에서는 운송서류에 관하여 제일 먼저 복합운송서류가 나오므로,⁴⁸⁾ 신 ISBP도 UCP 600과 일치하도록 배치 순서를 교제한 것이다.⁴⁹⁾

동시에 복합운송서류 및 선화증권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목의 영문 표기가 일부 변경되었다. 구 ISBP에서는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s’이었던 것을 신 ISBP에서는 ‘Transport Document Covering At Least Two Different Modes of Transport’로, 또한 구 ISBP에서는 ‘Ocean/Marine Bills of Lading(Covering Port-To-Port Shipment)’이었던 것을 신 ISBP에서는 ‘Bills of Lading’으로 변경하였다.⁵⁰⁾

47) 飯田勝人, 전계논문, p.4.

48) 이것은 현재의 관행에 있어서 복합운송서류의 중요성과 이것이 오늘날 발행되는 운송서류의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라는 사실을 반영하여 운송서류 중 가장 먼저 배치한 것이다(H. Erdemol, op. cit., p.3.).

49) 飯田勝人·平野英則, “新信用狀統一規則(UCP600)と輸入與信, 『銀行法務21』, No.675, 2007. 6, p.48.

50) 飯田勝人, 전계 주 8, p.5.

마지막으로 무엇이 원본 서류를 구성하는 것인가에 관한 은행위원회 결정 즉, “The determination of an ‘Original’ document in the context of UCP 500 sub-Article 20(b)”는 그 취지가 대부분 UCP 600 내에 삽입되었지만, 그것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전체의 원문은 ISBP 681의 부록란에 배치되었다.⁵¹⁾

IV. 요약 및 결론

본고에서는 신 ISBP의 개정 배경 및 경위, 주요 개정 내용을 고찰하였다. 여기에서는 본론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요약하고 실무상 유의할 점을 제시함으로써 글을 맺고자 한다.

신 ISBP는 구 ISBP의 개정판이라기보다는 최신판의 개념에 가깝다. 따라서 구 ISBP의 대부분의 조항들은 변경 없이 신 ISBP로 옮겨졌다. 그렇지만 구 ISBP로부터 17개 조항이 제외되고 2개 조항이 신 ISBP에 신설되어 총계 185개 조항으로 구 ISBP보다 15개 조항이 감소되었다. 이는 대부분 UCP 600에 관련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신 ISBP에서는 UCP 600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중복되는 조항들을 대부분 제외한 결과이다.

형식상의 변화로는 먼저 조항의 표시에 관한 첫 글자가 대문자로 Article 이었던 것이 모두 소문자인 article로 변경되었다. 또한 운송서류의 배치 순서를 오늘날 복합운송서류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복합운송서류, 선화증권, 용선계약부 선화증권 순서로 정리하였다. 구 ISBP의 일부 제목을 신 ISBP에서 변경한 것도 눈에 띈다. 마지막으로 원본 서류에 관한 은행위원회 결정을 UCP 600 조항에 일부 삽입하고 전체의 원문은 신 ISBP의 부록란에 배치하였다.

신 ISBP와 관련하여 실무상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UCP에 규정이 없는 경우 ISBP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불일치를 주장하는 경우는 어디까지나 UCP에 기초하여

51) Anonymous, supra note 14, p.2.

주장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UCP에 규정이 없는 경우 ISBP를 인용하여 그것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록 UCP에 규정이 있는 경우이더라도, ISBP에 기초하여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문제는 ISBP에 기초한 지급거절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어디까지나 UCP에 기초한 거절을 행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말할 수 있다.⁵²⁾

다음으로 UCP 600의 적용을 수정하거나 배제하는 신용장 조건은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또한 영향을 줄 수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신 ISBP의 관행을 고려할 때 당사자들은 UCP 600 규정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거나 수정하려는 화환신용장 조건에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⁵³⁾

52) 飯田勝人・高橋義治・水口久仁彦・平野英則, “新信用狀統一規則(UCP600)の成立が外爲實務に與える影響, 『金融法務事情』, No.1800, 2007. 4. 15, p.46.

53) 신 ISBP 서문.

참 고 문 헌

- 대한상공회의소 편, 『ISBP(국제표준은행관행) 공식번역 및 해설서』, 대한·서울상공회의소, 2007. 12.
- 정용혁·지정준, 『신용장 서류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관행 ISBP』, 신생커뮤니케이션, 2007. 9.
- 한국무역상무학회 편, 『국제표준은행관습(ISBP)』, 삼영사, 2003.
- 飯田勝人, “公表お目前にしたISBPの[最新版(updated version)]の概要, 『金融法務事情』, No.1801, 2007. 4. 25.
- 飯田勝人·平野英則, “新信用狀統一規則(UCP600)と輸入與信, 『銀行法務21』, No.675, 2007. 6.
- 飯田勝人·高橋義治·水口久仁彦·平野英則, “新信用狀統一規則(UCP600)の成立が外爲實務に與える影響, 『金融法務事情』, No.1800, 2007. 4. 15.
- 水口久仁彦, “新[荷爲替信用狀に關する統一規則および慣例](UCP 600)の採擇と銀行の對應について, 『國際金融』, 1172호, 2007. 1. 1.
- Anonymous, “ISBP 681 approved unanimously”, DCINSIGHT, Vol.13, No.3, 2007. 7/9,
- , “ISBP on tap”, DCINSIGHT, Vol.13, No.2, 2007. 4/6, p.2.
- , “UCP update : Working on the final draft”, DCINSIGHT, ICC, Vol.12, No.3, 2006. 7/9.
- Bacon, L.A.J., “Some key issues in the UCP revision”, DCINSIGHT, Vol.11, No.1, 2005. 1/3.
- Christensen, K., “UCP revision - the last six miles”, DCINSIGHT, ICC, Vol.12, No.3, 2006. 7/9.
- Erdemol, H., “A summary of the updated ISBP”, DCINSIGHT, Vol.13, No.3, 2007. 7/9.
- Ford, M., “What traders expect from the new UCP”, DCINSIGHT, Vol.11, No.1, 2005. 1/3.
- Smith, D., “The Insight interview: Donald Smith”, DCINSIGHT, Vol.13, No.3, 2007. 7/9.

ICC,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2007.

,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subject to UCP 600(ISBP), ICC Publication No. 681, 2007.

,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cation No. 645, 2003.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1993.

<http://www.iccbooks.com/Product/ProductInfo.aspx?id=485&cid=121>

ABSTRACT

A Study on the new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subject to UCP 600,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81

Lee, Bang Sik · Park, Suk Jae

Since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 in 2003, ICC Publication No. 645 has become an invaluable help to the documentary credit practitioners including banks, companies, transportation and insurance companies etc.

However, with the approval of UCP 600 in October 2006, it has become necessary to provide an updated version of the ISBP.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his ISBP is an updated version as opposed to a revision of ICC Publication No. 645. The new ISBP has been implemented concurrently with UCP 600 since July 1st, 2007.

The first necessity was to replace UCP 500 article numbers with those of UCP 600. Second, where it was felt proper, the contents of some paragraphs that appear in ICC Publication No. 645 and that have been covered in UCP 600 have been removed from the updated version of the ISBP. This explains the reduction in the number of paragraphs from 200 to 185.

The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s documented in the new ISBP are consistent with UCP 600. This ISBP does not amend UCP 600. It explains how the practices articulated in UCP 600 are applied by documentary practitioners. The new ISBP and the UCP 600 should be read in their entirety and not in isolation.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any terms in a documentary credit which modifies or excludes the applicability of a provision of UCP 600 may also have an impact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s. Consequently, when parties concerned must take into account any terms in a documentary credit that expressly modifies or excludes a rule contained in UCP 600.

Key Words : ISBP, ICC, UCP 600, UCP 500,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L/C,